입법동향 – 2026년 제2호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

일 잘 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이 자료는 의원님들의 자치입법 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입법정책담당관(입법지원팀)에서 입법정책 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하여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발행부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280-4415)

편집·검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입법지원팀(☎ 280-4414)

인　　쇄: 2026년 2월　일

발　　행: 2026년 2월　일

목 차

Ⅰ. 타 시도 입법 동향

1 〔제정〕「대구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7

2 〔제정〕「대전광역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 … 11

3 〔제정〕「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13

Ⅱ. 국회 및 정부 입법 동향

1 〔일부개정〕「아동복지법」 ····· 19

2 〔일부개정〕「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24

Ⅲ. 해외 법제 동향

1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최초「인공지능법」전면 시행 ····· 35

2 중국,「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개정 ····· 37

Ⅳ. 입법·정책 현안

○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과제 ····· 41

Ⅴ.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1 조례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동 경비 지원 규정 가능 여부 … 47

2 지자체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조례 규정 필요성 여부 … 50

Ⅵ. 〔법제처〕 법령 해석 사례

1 인터넷 등으로 수강생 모집, 대면 교습시설의 학원 해당 여부 … 55

2 업종별·개별 법률간 신고〔등록〕의무에 관한 사항 … 58

Ⅰ. 타 시도 입법 동향

Ⅰ. 타 시도 입법 동향

1 [제정] 「대구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2. 20.] [대구광역시조례 제6462호, 2026. 2. 20., 제정]

□ 관련 상임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 제정이유

○ 최근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급발진 의심사고의 특성상 사고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규명**이 쉽지 않아 **사고 원인 분석 및 사후 대응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태조사 및 안전 교육**을 통해 시민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급발진 의심사고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제4조)**

- 급발진 관련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급발진 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예방대책 마련을 통해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영상 기록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 (제6조)**

- 공용차량의 영상 기록장치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 조작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분쟁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제도 마련 (제7조)**

- 급발진 의심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피해자 지원을 통해 사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입법 시사점

▲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은 지자체가 관할구역 내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충실한 사업이행이 뒷받침 될 경우 그 제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급발진 의심사고 신고 건수는 총 315건**으로 연평균 30건 이상에 해당되나, **신고 건수 대비 급발진 신고로 확정된 사례가 없고 사고 원인 규명의 주체가 당사자**인 제약 탓에 **후속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범정부적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실태조사 및 지원이 요구됨**

<최근 10년간 급발진 의심사고 신고 건수> (한국교통안전공단)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신고 건수	57	58	39	33	25	39
연 도	**2022**	**2023**	**2024**	**2025**	**합계**	**연평균**
신고 건수	15	24	8	17	**315**	**31.5**

✓ 도는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통해 교통안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 중에 있으나,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도) 운전자가 차량 결함을 직접 입증**해야 해 사실상 인정 가능성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 **서울, 대구, 전남, 강원, 충남·북, 울산 등**과 같이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실태조사 및 사고 예방교육, 공용차량에의 영상 기록장치 설치,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증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붙임 「대구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급발진”이란 운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동차가 스스로 급가속하는 현상을 말한다.
3. “급발진 의심사고”란 급발진이 의심되는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4. "피해자"란 급발진 의심사고로 생명 · 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가족으로서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공용차량”이란 「대구광역시 공용차량관리 규칙」 제2조제1호의 차량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발진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급발진 의심사고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급발진 관련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5조(급발진 사고 예방 교육) 시장은 급발진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급발진 예방을 위한 자동차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
2. 급발진 발생에 대한 대처 요령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영상 기록장치 설치) 시장은 차량 급발진 사고의 예방과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하여 공용차량에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의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 기록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피해자 지원) ① 시장은 급발진 의심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법률 및 심리상담
2. 그 밖에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방법 및 대상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협약체결 및 협력) 시장은 급발진 사고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민간기업·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정]「대전광역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

[시행 2026. 2. 13.] [대전광역시조례 제6601호, 2026. 2. 13., 제정]

□ 관련 상임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제정이유

대전광역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대전광역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입법 시사점

▲ 본 조례를 통해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근거를 마련, 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관계 상위법령인「국민건강증진법」과「보건의료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당뇨병을 심뇌혈관질환의 선행 질환으로 정의**하고 **지자체는 이에 대한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당뇨 질환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만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당뇨병이 **과체중 또는 비만인 어린 소아에서 점차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소아기부터 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붙임 「대전광역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사람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에는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홍보
2.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교육
3. 소아·청소년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기 및 시스템 등의 보급
4. 당뇨병 관리기기, 소모성 재료 구입 등의 의료비 지원
5. 그 밖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제정]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시행 2026. 2. 20.] [충청남도조례 제6094호, 2026. 2. 20., 제정]

□ 관련 상임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제정이유

○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는 온·오프라인 전반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성착취물의 유통과 **2차 피해**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으나, **피해자의 보호·회복지원, 디지털 성착취 대응, 관계기관 협력 및 지역사회 기반의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필요함.

○ 이에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본계획 등 (안 제5조)**

-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책, 예방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사업 (안 제6조)**

- 상담·피해회복·긴급구조 및 보호, 사례관리, 예방교육,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비밀 엄수 (안 제9조)**

- 관련 업무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함.

○ **협력체계 구축 (안 제10조)**

-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

□ 입법 시사점

▲ 아동·청소년은 온라인 이용 빈도가 높고, 인지적·사회적 요인에 따라 자기 방어 능력이 성인에 비해 부족하여 성착취 범죄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본 조례를 통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가 차원의 범죄 처벌과 기본적인 보호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 실정에 맞는 예방사업 추진, 피해자 밀착 지원,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 할 수 있음

- ('24.기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평균연령은 14~16세가 49.0%로 가장 많았고, 피해를 입은 경로는 채팅 앱이 42.2%로 가장 많았음
- 또한, 성범죄 유형 중 '조건만남'이 43.6%로 가장 높았으며, '디지털 성범죄'는 11.8%로 나타남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피해경로 및 피해 유형> ('24.기준, 성평등가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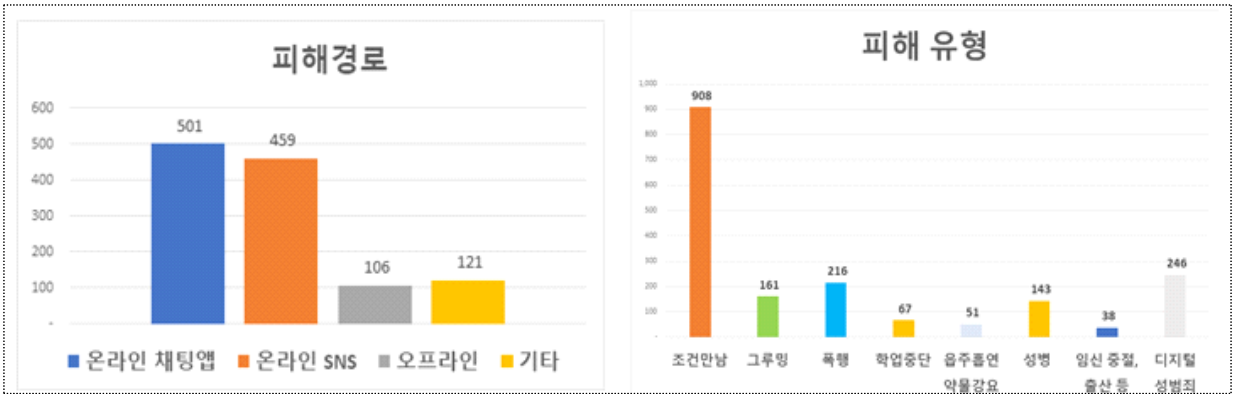

✓ 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고체계 구축·운영, 피해자 의료 및 법률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는 디지털에 국한되지 않으며** 다양한 형태의 **범죄유형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특성상, 충남과 유사한 별도 조례 제정으로 핀셋 지원 및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붙임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방지 및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청소년 성착취”란 아동·청소년을 부당하게 성적으로 이용하여 정신적·물질적·경제적·사회적 등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제15조의2까지 규정한 범죄행위를 말한다.
3.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이란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아동·청소년의 권리) 아동·청소년은 모든 형태의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4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성착취 예방 교육 및 홍보
3.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
5. 그 밖에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도지사는 아동 · 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아동 ·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착취 피해아동 · 청소년에 대한 상담, 피해회복 · 자립지원
2. 성착취 피해아동 · 청소년에 대한 긴급구조 · 보호
3. 성착취 피해아동 · 청소년에 대한 실태 및 사례관리
4. 성착취 피해아동 · 청소년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재판 시 전문상담원의 파견 · 동석 및 관련 기관 연계
5. 성착취 피해아동 ·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아동 · 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온 · 오프라인 모니터링, 도민감시 및 신고 활성화
7. 아동 · 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조사 · 연구와 홍보 · 캠페인 등 인식개선
8. 그 밖에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기간의 연장) 도지사는 성착취 피해아동 · 청소년이 지원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1. 성착취 피해아동 · 청소년: 20세까지
2. 성착취 피해아동 · 청소년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충청남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에 따른 경계선 지능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24세까지

제8조(지원)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하는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엄수) 이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동 · 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Ⅱ. 국회 및 정부 입법 동향

Ⅱ. 국회 및 정부 입법 동향

1 [일부개정] 「아동복지법」

[시행 2026. 8. 4.] [법률 제21321호, 2026. 2.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도 조례 개정 소요에 해당되는 사항만 작성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아동학대사례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신설>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사례판단을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입법 시사점

▲ 관련 상임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해당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올 2.3.에 개정되어 8.4.부로 시행되는 「아동복지법」의 주요 개정 사항은 아동학대사례판단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소속으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임

✓ 이에 따라, 시행령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에 관한 기준이 규정되는 것을 살펴 도 해당 조례를 개정할 수 있겠으며, 현 조례상 아동학대예방위원회와의 기능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붙임1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 · 교육 · 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 · 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상담 · 조사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신체적 · 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사례의 판단(이하 "아동학대사례판단"이라 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④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 · 도 또는 시 · 군 · 구의 조례로 정한다.

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아동학대사례판단을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조직 ·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2 「전북특별자치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아동학대예방과 보호 및 치료에 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의 발견 · 보호 ·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도, 시·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도, 시·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업무와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6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 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아동학대예방과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예방 등에 필요한 시책
2.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시·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관계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아동학대예방과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관련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아동학대예방 관련 행사와 홍보) 도지사는 법 제23조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일부개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333호, 2026. 2. 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 고등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주체를 교육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여 시·도별 계획을 수립토록 함

□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제5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도 기본계획(이하 "시·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도의 행정적·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 입법 시사점

▲ 관련 상임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해당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약칭) 지방대육성법 개정('26.8.11.시행)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가 교육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되었고, 시행령으로 정하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이 조례로 정하게끔 위임됨

✓ 이에 따라, 도 해당 조례에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해야 함

붙임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도(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본계획(이하 "시·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시·도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시책과제 및 중기·장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을 위한 시·도의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시·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5.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지역 내 관계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지방대학의 특성화에 관한 사항
8. 지역인재에 대한 채용촉진 및 지역정주에 관한 사항
9. 외국인 유학생 유치·학업·취업·정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둘 이상의 시·도를 통합하여 시·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가 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방대학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등교육법」 제59조의3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한 시·도 기본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도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도의 행정적·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시·도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 기본계획의 상호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도지사에게 시·도 기본계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연도별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시·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등을 위한 시·도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가 시·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3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도 시행계획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도의 행정적·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붙임2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제3조(육성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2. 교육부 글로컬대학 지정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방비 매칭 지원
4. 지역산업체 수요 맞춤 인력 양성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2. 정부나 전북특별자치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
3. 국공립 연구기관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방대학 및 지역대학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4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책의 평가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사업 및 그 협력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35퍼센트 채용을 포함한 지역균형인재의 채용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기업유치지원실장·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하며, 위촉직 위원은 대학·산업체·연구기관 등의 인사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2. 위촉직 위원: 2년(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3조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시회의를 개최할 경우로서 의장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공동추진 등) 도지사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사무국 설치 및 운영)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지역 내 대학은 상호 협력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소속 직원 파견 및 운영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Ⅲ. 해외 법제 동향

Ⅲ. 해외 법제 동향

1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최초 「인공지능법」 전면 시행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주요내용 (요약)

○ 카자흐스탄, 「인공지능법」 시행 ('26.1.18.)

○ **중앙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의미

○ 인공지능(AI) **시스템 운영의 근본 원칙** 규정,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관리 체계 마련 목표

○ 해당 법 시행을 통해 인공지능 시스템을 **정보화의 대상**(객체)으로 인정, 법적 범위 내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 활용 가능

○ 인공지능 운영에 대한 **책임과 통제 원칙** 규정, 인공지능 시스템의 소유자 및 운영자의 **위험 관리, 안전성 확보, 사용자 지원** 등 의무 규정

□ 주요 조문 구성

구 분	주요내용
제4조 및 제9조	**<인공지능 운영의 핵심 원칙 구체화>** - 합법성, 공정성, 평등성, 투명성 원칙 규정 - 시스템 활용 과정에서 인간의 자율성과 의사결정 자유 보장 -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안전성 확보 강화
제17조제3항	**<개발 및 운영을 금지하는 인공지능 기능 규정>** - 개인에게 피해를 초래하거나 위험 유발 가능한 기능 금지 - 개인정보법 위반을 통한 데이터 수집 및 처리행위 금지
제21조	**<인공지능 활용 상품, 용역 등에 인공지능 사용 표시 의무화>**
제25조부터 제27조	**<국가 인공지능 플랫폼 관련 규정 명문화>** - 인공지능 기술 발전 및 혁신 촉진을 위한 제품 개발, 학습, 시험 등에 관해 규정

□ 인공지능 관련 국내 현황 / 중앙아시아 협력

○ 우리나라는 '25.1월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 및 시행한 이후, '25.12월에 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개정*하여 올 7월부터 시행 예정임

*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 수립·시행, 전문회사, 선도사업 등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 확대 목적

○ 또한, 최근 중앙아시아와 **『한-중앙아시아 AI 인재 양성 협력 포럼』**('25.11.개최)을 통해 인공지능 분야 협력 및 경험 공유 확대, 공동 교육·기술 이니셔티브 발전을 위한 **체계적 파트너십의 필요성**을 공유한 바 있음

○ 카자흐스탄의 이번 「인공지능법」 제정으로 향후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인공지능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법 제정을 통해 **한국-중앙아시아 간 AI 협력**에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① **'규제 기반'의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환경 조성**

→ 법적 명확성 확보 (한국 기업의 카자흐스탄 진출 시 법적 불확실성 해소)

→ 신뢰성 확보 (한국의 AI기술과 솔루션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 유리)

② **정부 주도 AI 프로젝트의 구체화 / 속도 향상**

→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한국의 공공분야 AI, 스마트시티 등 기술 수출기회 확대)

→ 2026년 AI의 해 이니셔티브 (카자흐스탄, '26년을 'AI의 해'로 지정, 한국이 이니셔티브에 참여하여 구체적 IT 협력 프로젝트 착수 가능)

③ **인프라 중심 → 'AI 활용'으로 협력 분야 확장**

→ 기술 전수 및 인재 양성 (한국, 카자흐스탄에 고위험 AI 관리 등 노하우 전수 가능)

→ AI 고도화 기술 수요 (AI 주권 확보를 위한 대영 언어 모델 개발 등 협력분야 확대)

2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개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주요내용 (요약)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5년 12월 27일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이하 "대외무역법")**을 공포한 후, '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대외무역법은 '94년 제정 이후 '04년, '16년, '22년 세 차례 개정

○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노선 유지**

- **(제6조)** 적극적으로 국제 경제 및 무역 규칙 제정에 참여
- **(제7조)** 국가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과 연계한 무역 정책 준법 시스템 구축

○ **실질적 제도화 및 시장 예측 가능성 안정화**

- **(제23조)** 가공무역 관리 규범과 내수 판매 전환 규정 명확화
- **(제27조)** WTO의 '서비스 무역에 대한 일반협정(GATS)' 참고, 서비스 무역 4가지 형태 규정

○ **무역 균형 발전 및 무역 생태계 지원 조치 추가**

- **(제56조)** 무역 균형 발전에 대한 내용 추가
- **(제63조)** 외국인 무역 경영자의 국제 시장 진출에 대한 서비스 지원 강조
- **(제64조)** 물류 및 박람회 등 무역의 전반적 사항에 대한 내용 추가

○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 추가**

- **(제17조, 제18조, 제29조 및 제30조)** 권한을 부여받은 주무부처는 필요한 경우 안보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19조, 제30조)** 필요한 조치의 적용 범위를 "전시"에서 "국제 관계가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로 확대

□ 국내 시사점

① 제재 전반에 대한 상위 법적 근거 마련

○ 기존 중국의 수출통제법과 반외국제재법은 특정 분야나 상황에 한정된 규정이라는 한계

○ 개정된 대외무역법은 기존 법령의 이러한 한계 극복, 포괄적인 상위법적 근거를 갖추었다는 평가

○ **중국 내 생산·조달이 있는 기업**은 중국의 규제가 **미국이나 EU 등의 규제와 충돌할 가능성**을 전제로 **의사결정 프로토콜** 정교화 / **공급망 리스크 관리** 전략 필요

② 리스크 축소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필요

○ 향후 국제 거래 및 공급체인 협력 등을 진행함에 있어 (중국의 주권·안보·발전 이익을 **침해**하거나 중국 기업과의 **거래중단** 또는 **차별적 행위**에 대한) **간접적 관여/지원**까지 포함한 **컴플라이언스 점검** 필요

○ 거래 전에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제재명단 등재 여부**를 조사하는 등, 국가안보 및 무역과 관련된 **심사체계** 구축

○ 영업과정에서 **제3자에 대한 제재의 회피**를 지원·협조하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유의 / **법적 안정장치** 마련 필요

③ 기타 시사점

○ 중국은 **'국제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를 통해 기존에 투자가 제한됐던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개방**할 것으로 보임

○ 한·중 사이에 상호 인정되는 **전자계약 및 서명 표준**이 도입될 경우, 이에 부합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절차 간소화 및 거래 활성화)

Ⅳ. 입법·정책 현안

Ⅳ. 입법·정책 현안

◎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과제(우회전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를 중심으로)

※ 출처: 국회 입법조사처, NARS info (2026.1.30.) / 행정안전팀 정주완 입법조사관

2022년 7월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되었으나, 이후에도 보행자 사고 피해는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는 운전자의 낮은 이해도와 우회전 신호·시설 등 인프라 부족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행자 교통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홍보 방식 전환, 시설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 추진 현황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강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도록 규정하여 보행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였음

*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를 의무화

○ **(우회전 상황 일시정지 의무)** 차량 적색 신호등+보행자 녹색 신호등일 경우, 차량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뒤 안전을 확인하고 우회전 운행

□ 교통사고 및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 보행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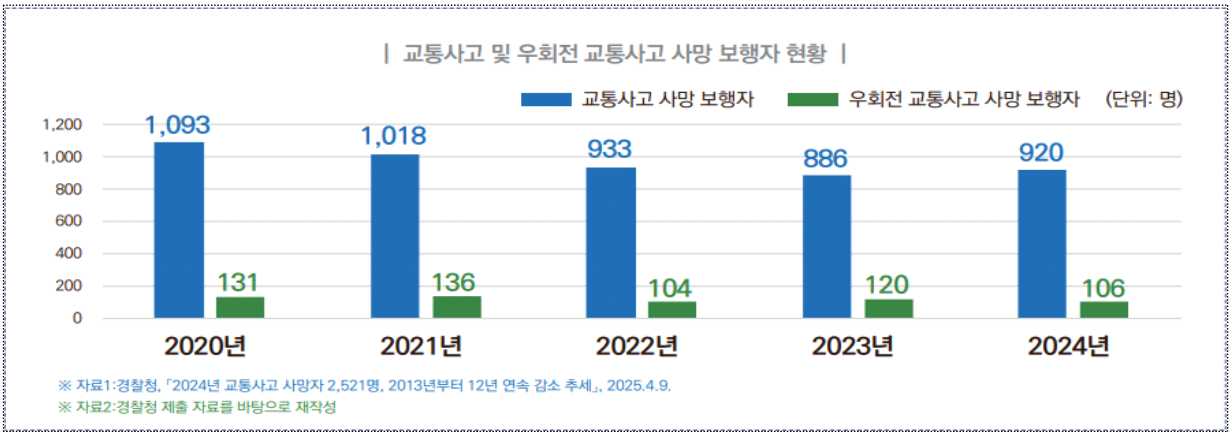

※ 2023년 대비 2024년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망은 증가하였고,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망의 경우 최근 5년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상황

□ 제도 정착의 장애 요인

○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되는 상황의 의미 불명확

○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란)** 보행자가 횡단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횡단보도에 가까이 있으면서 사고 위험성이 유추될 수 있는 경우 등을 기준으로 위반을 단속함

➜ **'사고위험성이 유추될 수 있는 경우'**는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으로, 구체적인 예시가 없으면 운전자의 이해도가 높지 않으며, **특히 우회전 상황에서는 운전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더욱 저조한 것으로 확인**

○ 또한, 당초 계획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의 증설이 지연되고 있음

□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 과제

○ **변경된 제도의 정착을 위해, 교육과 홍보 방식의 전환 필요**

○ **뉴미디어** 중심(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블로그 등)으로 제도에 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방안 마련 필요

차량 일시정지 제도 교육·홍보 현황			(단위: 회, 매)
	2023년	2024년	2025 (10월)
TV	326	1,776	216
신문	323,329	1,826	22,301
라디오	886	939	288
전광판	4,983,300	130,859	314,846
홍보전단	3,199,589	2,644,260	2,059,833

※ 자료: 경찰청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전체 교육·홍보의 95% 이상이 전통적 매체(TV, 라디오, 신문 등) 집중

○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교통시설 개선도 병행하여야 함

① **보행 취약계층 집중 지역 우선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보행 취약계층이 집중된 지역부터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②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방안 검토**

⇒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부 끝에서 일정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거나 교차로 회전반경을 축소하는 방안

③ **위험요소 제거 및 안전장치 설치**

⇒ 가로수 등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사고위험이 높은 교차로의 교통섬을 철거하거나 가까운 곳에 고원식 횡단보도* 등 속도 저감 시설 설치

* (고원식 횡단보도) 과속방지턱의 상부 평탄면을 횡단보도로 활용하는 구조

Ⅴ.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Ⅴ.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1 조례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동 경비 지원 규정 가능 여부

[의견26-0004, 경기도 / 회신일자: 2026.1.21.]

□ 질의요지

도지사가 소집한 회의, 출장에 참석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회원에게 회의참석수당, 출장 여비·실비 등의 활동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고,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각주: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참조).

이 사안에서 「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하 "경기도조례안"이라 한다) 제3조에서는 도지사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원의 회의참석수당, 출장 여비·실비 등의 활동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와 같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회원에게 회의참석수당 등의 활동 경비를 지원하는 사무가 경기도의 소관사무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바르게살기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제2호),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제4호)를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경기도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하는 사무는 경기도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정하여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회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등의 활동 경비의 지급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르게살기조직법 제3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조직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근거규정으로, 조직의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등의 활동 경비 지급의 근거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 법 제17조제1항제4호

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이 사안에서 회의참석수당 등의 활동 경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회원이 회의 등에 참석하지 못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면(각주: 법제처 2025. 10. 14. 의견제시 25-0303 참조)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자치법규 입안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② 지자체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조례 규정 필요성 여부

〔의견26-0014, 부산광역시 강서구 / 회신일자: 2026.1.9.〕

□ 질의요지

가. 지방자치단체(각주: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공공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상시근무 직원 1천명 미만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조례에 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에 규정해도 되는지?

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지출 근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고용한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한 임금 지출의 근거를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반드시 조례에 규정해야 하는지?

□ 의견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그 사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고,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러한 사항을 정할 때 규정 형식을 특정하여 정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규칙 외에 넓은 의미의 자치입법인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25. 11. 27. 의견제시 25-0392, 법제처 2024. 5. 17. 의견제시 24-0155, 법제처 2022. 9. 28. 의견제시 22-0218 참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각주: 법제처 2019. 5. 8. 의견제시 19-0159 참조),** 이 사안의 경우에는 그러한 자치사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 형식을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지방자치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대해 법령에서 규정 형식을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각주: 법제처 2025. 11. 27. 의견제시 25-0392 참조), 이 사안의 경우 반드시 조례에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훈령 등 행정규칙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 공금 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제4호)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 지출 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못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주민 일반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방재정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각주: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추531 판결,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 120쪽 참조).**

그런데, 질의 가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운영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출하는 것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체육지도자 및 운동선수 등을 고용하여 그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출하는 것은 그러한 자치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경비의 지출로 보이고,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보조금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일반적인 경비의 경우에는 법률이나 조례에 개별적인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지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및 지도자·선수에 대한 임금의 지출 근거는 반드시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Ⅵ. (법제처) 법령 해석 사례

Ⅵ. [법제처] 법령 해석 사례

1 인터넷 등으로 수강생 모집, 대면 교습시설의 학원 해당 여부

[법제처, 25-0736, 민원인 / 회신일자: 2026.1.28.]

□ 질의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2조제1호 본문에서는 "학원"을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터넷 등으로 9명 이하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대면으로 교습하는 시설이 학원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지?

□ 회답

인터넷 등으로 9명 이하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대면으로 교습하는 시설은 학원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먼저 학원법 제2조제1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학원"을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지식·기술 등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10명 이상의 학습자'를 교습 대상으로 하는 경우란 같은 시간에 대면으로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9명 이하'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대면으로 교습하는 경우가 같은 시간에 10명 이상의 학습자를 교습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9명 이하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대면으로 교습하는 시설의 경우가 **'불특정다수의 학습자'를 교습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학원법령에서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의 의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불특정다수'는 특정되지 않은 임의의 2명 이상의 사람을 의미하고, '불특정다수의 학습자'는 학습자별로 교습 시간과 장소가 상이하여 같은 시간에 교습하는 학습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원격 교습의 경우에 적용(각주: 대전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6노248 판결례(확정) 참조)**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인터넷 등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였더라도 원격 교습이 아닌 경우로서 9명 이하의 학습자를 대면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불특정다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경우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원의 정의규정에 관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학원법(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2조제1호에서는 종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로 규정하였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로

개정(각주: 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일부개정된 구 학원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여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학원의 교습행위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온라인 강의 업체 등에 대해서도 학원법에 따라 강사자격, 강의내용 및 교습비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하려는 취지**(각주: 2011. 6. 28. 의안번호 제1812398호로 발의된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이유 참조.)인바, **대면으로 교습하는 시설임에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강생을 모집하였다는 이유로 학원의 범위에 포함시켜 학원법령의 규율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등으로 9명 이하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대면으로 교습하는 시설은 학원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업종별·개별 법률간 신고(등록) 의무에 관한 사항

(법제처, 25-0746, 민원인 / 회신일자: 2026.1.20.)

□ 질의요지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기타테마파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본문에서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테마파크업이 「게임산업법」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신고와 「게임산업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모두 하여야 하는지?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신고와 「게임산업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모두 하여야 합니다.

□ 이유

먼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어떤 행위가 둘 이상의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둘 이상의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인 반면, 「게임산업법」은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 등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인바, **「관광진흥법」과 「게임산업법」은 그 입법목적이 다르고, 두 법 중 어느 법이 다른 법에 대해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거나 어느 법에서 다른 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사업의 종류 중 하나인 기타테마파크업에 대한 신고 절차를 정하고 있는 한편, 게임산업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는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중 **'게임물의 성격이 섞여 있는 테마파크시설'은 '게임물'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2조제6호바목 단서에서는**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테마파크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테마파크시설'을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의 경우 '게임제공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호의2가목에서는 **게임제공업의 세부 유형 중 하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제2항 본문에서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규율 대상인 테마파크시설과 관련하여, 게임산업법에서는 게임물의 성격이 섞여 있는 테마파크시설 중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테마파크시설을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하여 게임제공업 허가 및 등록 절차를 정하고 있는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테마파크업이 게임산업법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진흥법」 및 「게임산업법」에서**

서로 달리 규율하고 있는 사항이 모두 적용되므로,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신고와 「게임산업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모두 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입법연혁적으로 종전에는 "게임물"의 정의에서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을 제외하였으나, 게임산업법상 "게임물"과 「관광진흥법」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특성이 혼재된 혼합기기에 대한 정부의 관리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구 게임산업법(2018년 6월 12일 법률 제15637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에서는 제2조제1호나목에 단서를 신설하여 게임물의 성질이 혼재된 유기기구를 게임산업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인바, 이러한 **게임산업법의 개정취지를 고려할 때에도 이 사안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과 게임산업법 제26조제2항 중 하나의 규정만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신고와 「게임산업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모두 하여야 합니다.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